

신도위원회 규정

제1조 (명칭)

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신도위원회라 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위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신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남신도회, 여신도회,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함께 연대하여 공동선교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그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조직)

본 위원회는 아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총회 공천 6인(목사 3인)
2. 총회 신도부장
3. 각 신도회 대표 2인

제4조 (임기)

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위원은 3년조로 하고 당연직은 1년으로 한다.

제5조 (임원)

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.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위원장 1인, 서기 1인

제6조 (회집)

본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회를 정기회로 모이고 위원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7조 (임무)

1. 각 신도회 정책 개발
2. 각 신도회 협의회 개최

제8조 (개정)

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993년 9월 제78회 총회 제정
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
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
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
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